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김춘남, 권재욱, 김낙관, 김영길, 김태근, 박교상,
송용자, 안주찬, 양진오, 윤종호, 이선우, 이지연,
장미경, 최경동 의원(14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4월 13일

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춘 남 의원

나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,
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며, 지역경제 및 상권
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충전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
(안 제59조의2)
 - 당초 : 20퍼센트
 - 개정 : 30퍼센트
-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창고시설 건축 허용(안 별표3)
 -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
 - 바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 이하
-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판매시설)의 연면적 기준 완화 (안 별표13)
 - 당초 : 1천제곱미터 이상
 - 개정 : 3천제곱미터 이상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,
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30. ~ 4. 6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,
-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낮아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률에 맞추어 건폐율을 상향하여 충전시설 설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%까지 완화하고,
-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30m² 이하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며,
-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 기준을 현행 1,000m²까지에서 3,000m²까지로 완화시킴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